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규정

| | |
|----------|---------------|
| 규정번호 | 2-4-3 |
| 제정일자 | 2011. 12. 12. |
| 개정일자 | 2024.3.20. |
| 책임부서/팀·계 | 교무처 |

<2020.12.1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한다)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지역 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2.27 개정>

제2조(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정책) ① 본 대학은 직무능력 향상과 인성을 갖춘 중견직업인을 양성하여 지역산업과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무역량 교육과정 편성을 기본정책으로 한다.
<2014.2.27, 2020.12.15. 개정>

② 학과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2014.2.27 개정>

③ 교육과정개발 및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3.3.4, 2019.11.14 개정>

1. 교육과정의 개발은 전면 개정으로 하며 개편은 부분개정으로 시행한다. <2017.12.6, 2019.11.14 개정>

2. 교육과정 개발주기는 3년마다 시행하며 개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7.12.6, 2019.11.14 개정>

3. <2015.12.2 개정, 2016.2.5. 삭제>

4. 학과명을 변경한 학과는 개발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학과명 변경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변경학기부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2012.12.15. 신설, 2020.12.15. 개정,>

④ 전공교과목 편성 기본정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4.2.27, 2019.11.14 개정>

1.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직무역량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2012.12.15., 2020.12.15 개정>

2. 학과의 교육과정은 직무역량 보완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완·개편한다. <2012.12.15. 2020.12.15 개정>

3. 직무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과는 주기적으로 직무능력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2.12.15., 2020.12.15 개정>

4. 요구자(재학생, 졸업생,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⑤ 교양교과목 편성 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9.11.14.개정>

1. 핵심역량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2012.12.15., 2020.12.15 개정>

2. 직업인으로써의 가질 수 있는 인성교육과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노력한다.

3. 요구자(재학생, 졸업생,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4.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역할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19.11.14 개정>

제4조(교과과정) ① 본 대학의 교과구분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이루어지며 교양교과는 교양 선택과 교양필수로, 전공교과는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눈다.

② 단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졸업학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며 학점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3학점 이내로 한다. <2017.9.27 개정>

③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세부지침은 학과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12.6.11, 2014.2.27 개정>

④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은 교과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학과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편성하고 교육과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12. 6.11, 2014.2.27 개정>

제5조(이수단위) ① 이론과목은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하고, 실험·실습과 실기 관련 교과목은 주당 2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2·3년제 학과는 전문교양교과를 최대 4학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구분은 교양 선택으로 한다. <2016.8.19 개정>

③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0학점 이상, 3년제 10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 할 수 없으며, 2년제는 교양교과 6학점 전문교과 50학점 이상, 3년제는 교양교과 8학점, 전문교과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9.2.18., 2024.2.22. 개정>

④ 전문교과의 시수의 50%이상은 실험실습으로 편성하되 인문사회계열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다. <2014.2.27., 2019.2.18., 2024.2.28. 개정>

⑥ 계절 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2014.9.16 개정>

⑦ 정규수업이외에도 별도의 학점인정 지침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⑧ 단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반드시 개설하며 학과의 특성에 따라 최대 3학점 이내로 배정하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7.9.27 개정>

제6조(시간표 편성) ①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을 1교시로 하며, 교시별 수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2013.3.4, 2013.12.10 개정>

| 주간 | | | | 야간 | |
|-----|-------------|-----|-------------|------|-------------|
| 교시 | 시간 | 교시 | 시간 | 교시 | 시간 |
| 1교시 | 09:00~09:50 | 6교시 | 14:00~14:50 | 10교시 | 18:00~18:50 |
| 2교시 | 10:00~10:50 | 7교시 | 15:00~15:50 | 11교시 | 18:55~19:45 |
| 3교시 | 11:00~11:50 | 8교시 | 16:00~16:50 | 12교시 | 19:50~20:40 |
| 4교시 | 12:00~12:50 | 9교시 | 17:00~17:50 | 13교시 | 20:45~21:35 |
| 5교시 | 13:00~13:50 | | | 14교시 | 21:40~22:30 |

② 전임교원(강의전담 제외)의 수업일수는 주 4일 이상으로 한다. <2019.11.14., 2024.2.22. 개정>

③ 전임교원(강의전담)의 수업일수는 주 3일 이상으로 한다. 단, 전임교원(산학협력)의 수업일수는 주 2일 이상으로 한다. <2014.9.16, 2016.8.19 개정>

④ 수업시간은 수업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 특성에 맞게 배정 할 수 있다. <2013.12.10, 2019.2.18 개정>

⑤ <2019.2.18 삭제>

⑥ <2019.2.18 삭제>

제7조(강좌 운영) ① 강좌 당 수강인원은 학과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별 인원을 입학정원의 최소 단위인 3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복학, 전과, 재입학 등 학적변동에 따른 인원의 초과는 한 강좌 당 45명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다. <2012.6.11., 2024.2.22. 개정>

② 직업기초 교양강좌의 경우 온라인강좌로 운영하며, 강좌 당 최대 수강학생은 80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 <2024.2.22. 개정>

③ 합반은 동일교과목 2개 반의 수강인원이 45명 이하인 경우 합반한다.

④ 분반의 경우 최대수강인원이 초과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반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한해서 분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반할 수 있다. <2024.2.22. 개정>

1. 실습실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2. 수업기자재 수량이 부족한 경우
3. 출업 작품 교과목의 세부전공이 다른 경우
4. 개인레슨강좌의 경우
5. 직무역량의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 <2014.2.27., 2012.12.15., 2020.12.15 개정>
6. 기타 교과목 운영 상 필요한 경우

⑤ 교과목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 폐강한다. 단, 학과 요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2019.2.18., 2024.2.22. 개정>

제8조(시간표 공고 및 변경) 확정된 시간표는 수업개시 1개월 전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수업시간표는 총장의 승인 없이 변경 할 수 없다. <2019.11.14 개정><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제9조(교육품질관리) ① 학과에서는 지속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매 학년도 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학과교육품질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심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

② 대학교육품질위원회는 학과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심의하여 교육품질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2016.2.5 신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2.22.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2001년 제정된 교육과정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5조(이수단위), 제6조(시간표 편성), 제7조(강좌 운영), 제10조(기타)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